

충청북도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(대통령령 제13451호, 91. 8. 16)시행

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각교육장”을 “하급교육청교육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학무국장이”를 “중등교육국장이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갑류”를 삭제한다.

③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중 “을류”를 삭제한다.

④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부교육감”으로, “사회체육과장”을 “중등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3항중 “학무국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과학기술과장, 관리국 관리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부녀청소년과장”을 “초등교육국장, 관리국장, 사회교육체육과장, 초등장학과장, 과학기술과장, 행정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중 “사회체육과”를 “사회교육체육과”로 한다.

⑤ 단재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부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5항 제1호중 “학무국장, 관리국장”을 “본청 국장급이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1항중 “10월중에 교육감이”를 “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”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5항 제2호 중 “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관리과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)이 되며 위원은 각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각과장 및 각계장)이 된다”로 한다.

동조 동항 제3호중 “간사는 관리와 경리계장이 되고”를 “간사는 관리과경리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)이 되고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조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.</p> <p>② 위원은 <u>학무국장, 관리국장,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과장</u>으로 한다.</p> <p>제3조 - 제6조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 ①</p> <p>.....</p> <p>② 위원은 <u>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</u>으로 한다.</p> <p>제3조 - 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생략)</u></p>

부칙 제2조에 의거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조례의 내용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제명 : 충청북도학교환경위행정화 위원회설치조례</u></p> <p>제2조(설치) <u>각 교육장</u>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 ② <u>도정화위원회</u>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학무국장</u>이 되며</p> <p><u>제명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 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</u></p> <p>제3조(여비)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 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을 할 때에는 <u>국내여비규정(별표 1)의 제2호갑류</u> 해당자의 여비를 지급한다.</p> <p><u>제명 :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</u></p> <p>제16조(수당과 여비) <u>심사위원회</u> 위원에 대한 수당은 <u>국내여비규정 별표2</u> <u>여비정액표의 제2호 을류</u> 해당자에 준하 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 (설치) <u>하급교육청 교육장</u></p> <p>제3조(구성) ① ② 부위원장은 <u>중등교육국장</u></p> <p>제3조(여비) <u>국내여비규정(별표1)의 제2호 해 당자의</u></p> <p>제16조(수당과 여비) <u>국내여비규정 별표2</u> <u>여비정액표의 제2호 해당자</u>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명 :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</p> <p>제2조(조직) ② 협의회 위원장은 <u>학무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사회체육과장</u>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 ③ 협의회장은 <u>학무국</u> <u>초등교육과장</u>, <u>중등교육과장</u>, <u>과학기술과장</u>, <u>관리국관리과장</u>, <u>중앙도서관장</u> 및 <u>충청북도사회과장</u>, <u>부녀청소년과장</u>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.....</p>	<p>제2조(조직) ① <u>부교육감</u> <u>중등교육국장</u>..... ③ <u>초등교육국장</u>, <u>관리국장</u>, <u>사회교육체육과장</u>, <u>초등장학과장</u>, <u>중등장학과장</u>, <u>과학기술과장</u>, <u>행정과장</u>, <u>중앙도서관장</u> 및 <u>충청북도사회과장</u>, <u>청소년과장</u>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</p>
<p>제명 : 단재교육상조례</p> <p>제5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마감후 15인이내로 위촉하며, <u>학무국장</u>은 당연직위원이 되고</p>	<p>제5조 ① <u>부교육감</u>..... </p>
<p>제8조(추천 및 심사) ①-④항 생략</p> <p>⑤ 교육상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.</p> <p>1. 교원 및 일반부문 : 교육장, 고등학교장, <u>학무국장</u>, <u>관리국장</u></p>	<p>제8조(추천 및 심사) ①-④항 : 현행과 같음</p> <p>⑤ 1. 교원 및 일반부문 : 교육장, 고등학교장 <u>본청 국장급이상</u></p>
<p>제10조(시상) ① 교육상은 매년 1회 <u>10월</u>중에 <u>교육감</u>이 시상하며.....</p>	<p>제10조(시상) ①매년1회 <u>교육감</u>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.....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명 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<u>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</u> 제7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-④항 생략</p> <p>⑤ 교육청에는</p> <p>1.</p> <p>2.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관리과장이 되며</u> 위원은 <u>각계장이</u> 된다.</p> <p>3.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<u>관리과 경리계장</u>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7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-④항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교육청에는</p> <p>1.</p> <p>2. 부위원장은 <u>관리과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)</u>이 되며 <u>위원은 각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각과장 및 각계장)</u>이 된다.</p> <p>3. <u>관리과 경리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)</u>이</p>